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2기(2025.01.01~2025.12.31)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4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812(성주동) 당사 4동 강당

3. 회 의 목 적 사 항

가 . 보 고 사 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 부 의 안 건

제 1 호 의 안 : 제12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

제 2 호 의 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안) 신규대조표 참조

제 3 호 의 안 :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 관계	당해법인과 거래내역	채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상태 여부	비고
사내이사	정해영	(현) 디와이파워 사내이사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재선임
사내이사	주봉환	(현) DY MECHATRONICS 법인장	이사회	미등기임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사외이사	조경모	(현) 디와이 사외이사	이사회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사외이사	김태훈	(현) 지역스토틀링연구소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제 4 호 의 안 : 감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 관계	당해법인과 거래내역	채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상태 여부	비고
감사	이선규	(전) 포스코 인터내셔널 재무IR실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제 5 호 의 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 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주주님께서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②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03.13~2026.03.23 (24시간 행사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③ 본인인증 방법 :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휴대전화 인증
- ④ 수정동의안처리 :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5. 기 타

가. 본 소집통지서 발송시 당사의 "경영참고사항" 및 "주주총회 목적사항"등을 유첨하여야 마땅하나, 지면관계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금융감독원(<http://dart.fss.or.kr>)과 한국거래소(<http://kind.krx.co.kr>)의 전자공시 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dy.co.kr>) 전자공고에 게재하고, 다음 장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치장소 : 당사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

나.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812(성주동)

디와이파워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치웅



부의안건별 요약

[제1호 의안] 제12기 (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

- (1) 당해 사업년도의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2) 당해 사업년도의 연결 재무제표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안) 신규대조표 참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1) 임기 만료 : 사내이사 정해영, 사외이사 김태진
- (2) 재선임 : 사내이사 정해영
- (3) 신규 선임 : 사내이사 주봉환, 사외이사 조경모, 사외이사 김태훈
- (4) 이사 후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비고
사내이사	정해영	1970.08.25	2년	경희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디와이이노베이트 공장장('19.05~'26.01) 디와이이노베이트 대표이사('26.01~현재)	재선임
사내이사	주봉환	1967.02.07	2년	경상대 금속재료공학 석사 디와이파워 공장장('22.03~'23.10) DY MECHATRONICS 법인장('23.11~현재)	신규선임
사외이사	조경모	1951.06.28	2년	한양대학교 기계과 졸업 SBB Tech 대표('19.01~'21.12) 디와이 사외이사('24.03~현재)	신규선임
사외이사	김태훈	1969.12.28	2년	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 석사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11.01~현재)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삶의질 전문위원('26.01~현재)	신규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1) 임기 만료 : 감사 이상식
- (2) 신규 선임 : 감사 이선규
- (3) 감사 후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요약력	비고
감사	이선규	1965.11.27	3년	포스코 재무실장('22.01~'22.12) 포스코 정도경영실장('24.01~'24.04) 포스코인터내셔널 재무IR실장('24.05~'24.12)	신규선임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 제12기 한도 승인액 : 900 백만원
- (2) 제12기 집행 실적 : 504백만원
- (3) 제13기 승인 요청액 : 900 백만원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 제12기 한도 승인액 : 150 백만원
- (2) 제12기 집행 실적 : 71 백만원
- (3) 제13기 승인 요청액 : 150 백만원

●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안) 신규대조표

구분	기존	변경(안)	비고
제20조 (소집 통지 및 공고)	<p>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창원에서 발행하는 경남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u>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u></p> <p>④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①(현행 동일)</p> <p>②(현행 동일)</p> <p>③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u>독립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u></p> <p>④(현행 동일)</p>	독립이사제 적용
제21조 (소집 지)	(<u>소집지</u>)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u>소집지와 개최방식</u>) ①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u>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u>	<p>조목 변경</p> <p>전자주총 미도입 근거</p>
제27조 (의결 권의 대리행 사)	<p>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u>의의장</u>)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①(현행 동일)</p> <p>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전자위임장 근거 마련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수)	<p>①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되, <u>사외이사는</u>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p> <p>②이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하로 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p> <p>③<u>사외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사외이사</u>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사외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①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되, <u>독립이사는</u> 이사총수의 3분의1 이상으로 한다.</p> <p>②(현행 동일)</p> <p>③<u>독립이사</u>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u>독립이사</u>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u>독립이사</u>를 선임하여야 한다.</p>	독립이사제 적용
제35조의4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p>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u>사외이사</u>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②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u>독립이사</u>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p> <p>②(현행 동일)</p>	독립이사제 적용
부칙 제1조 (시행)	(신설)	이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시행일
제2조(소집지 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 치)	(신설)	제21조 및 제2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주총/위임장 관련 적용일
제3조(독립이 사에 관한 경 과조치)	(신설)	제20조, 제30조, 제35조의4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독립이사 관련 적 용일